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복지정책과)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126
----------	-----

제출년월일 : 2023. 5.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 보훈대상자 복지증진 및 보훈단체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성북구 보훈회관의 위탁기간 만료일(23.6.30)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시설

연번	시설명	소재지	현 위탁체	규모	현 위탁기간
1	성북구 보훈회관	성북구 화랑로 130 (월곡2동)	성북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대표 최백순)	토지 992㎡ 건물1,215㎡ (지하1, 지상3)	2021.07.01. ~ 2023.06.30

나. 위 탁 기 간 : 2023.7.1. ~ 2026.6.30(3년)

다. 위탁 사업의 범위

- 1)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 2)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3)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국가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 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 신청은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협회의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